

의안번호	제 656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임동현 의원
발의연월일	2021년 3월 3일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임동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56
----------	-----

발의연월일 : 2021년 3월 3일

발의자 : 임동현 의원

찬성자 : 박상돈, 송미애, 연종석,
이상식, 이상욱, 임영은 의원

1. 제안 이유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다. 기본계획(안 제4조)
- 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안 제5조)
- 마. 협력체계(안 제6조)
- 바. 민간위탁(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청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1-14호

(2021. 2. 15. ~ 2021. 2. 20.)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충청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추진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창작 지원
4.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 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 창작 지원
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7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생략)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생략)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생략)

□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2. (생략)

3. “공연자”란 공연을 주재(主幸)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한다.

4.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생략)

제10조(공연자 지원 및 공연장 설치·경영의 장려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